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310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검토의견	2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회의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6. 1. 26.

다. 회 부 일 : 2026. 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수협은행·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 간에 공급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에 해당 면제 특례는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수협은행·조합의 법정 기능 수행과 내부 업무 분담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특례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7항 및 제8항).

Ⅲ. 검토의견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25제7항·제8항) ○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제7항) - 면제대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 적용기한: <u>2026년 12월 31일</u> ○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제8항) - 면제대상: ● 수협은행이 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적용기한: <u>2026년 12월 31일</u>	☐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면제대상: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30년 12월 31일</u> ○ (현행과 같음) - 면제대상: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30년 12월 31일</u> ☐ 부 칙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이만희의원안 2026. 1. 27. 발의(의안번호 16332)

☐ 개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수협은행이 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여 수협중앙회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25제7항은 수협중앙회가 공급

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8항에서는 수협은행이 조합·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동 면세제도는 수협중앙회에서 신용부문을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 분리에 따른 추가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2015년 12월 신설되었으며, 이후 5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수협중앙회 분할 과세특례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규모는 2024년 69억원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명칭사용용역·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부가가치세	50	61	72	69	88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명칭사용료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¹⁾에 따라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수협은행·수협유통 등 영리법인이 수협중앙회에 지불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수산물 판매·유통 활성화와 교육·지원 사업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명칭사용료) ① 중앙회는 수산물 판매·유통 활성화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명칭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명칭사용료는 최근 증가추세로 2025년에는 557억 9,500만원 수준임.

[수협중앙회 명칭사용료 부과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협은행	31,186	40,037	39,769	44,632	55,712
수협유통 ¹⁾	-	-	67	31	-
수협노량진수산	35	36	37	38	41
수협개발	15	22	30	36	42
위해수협 ²⁾	0.4	0.5	0.9	1.6	-
계	31,236	40,096	39,904	44,739	55,795

주: 1)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수협유통의 명칭사용료 부과 제외('20~'22, '24.3분기~'26년) 결정

2) '24.11.29. 청산 완료

자료: 수협중앙회

전산용역의 경우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등이 전산시스템을 상호 위·수탁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수협은행이 조합으로부터 254억 5,200만원, 수협중앙회로부터 6억 4,200만원을 용역비로 수취하는 등 총 260억 9,400만원의 전산용역비가 발생하였음.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 전산운영 위·수탁용역 비용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수협은행 ^{공급} →조합 ^{사용}	수협은행 ^{공급} →중앙회 ^{사용}	계
2021	19,475	283	19,758
2022	21,098	284	21,382
2023	22,168	656	22,824
2024	23,930	661	24,591
2025	25,452	642	26,094

자료: 수협중앙회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명칭사용용역·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신경분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조직개편의 본 목적인 어업인의 이익증진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명칭사용의 경우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자회사의 수협중앙회의 명칭(무형자산)을 사용하는 행위가 법인격이 다른 주체 간의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었음. 이는 기업 가치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따른 부가가치 발생을 전제로 하나, 법적 분리라는 특수 상황에 기인한 세부담 증가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산용역의 경우 과거 수협중앙회 사내조직에서 각 사업부문에 전산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²⁾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임.

둘째,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타당성을 고려할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필요가 있음.

명칭사용료의 경우 수협중앙회가 경제·교육지원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영리법인에 부과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해당 부담만큼 수협중앙회 경제·교육지원 자금이 축소되어 어업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목적 달성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또한, 수협중앙회에 앞서 사업구조 개편을 실시한 농협의 경우 명칭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몰 없이 감면³⁾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협에 대해서도 명칭사용료 과세특례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음.⁴⁾

□ 다만, 동 과세특례가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지원적 성격임을 감안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사업구조 개편 완료 이후에도 동 면제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은 2016년에 실시되어 2022년 공적자금 상환까지 완료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 당시 적용되었던 부가가치세 면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조세특례의 한시적 운영 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제도의 관행적 연장을 초래할 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⑨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농협의 경우 해당 조문 신설(2011년 12월 31일) 당시에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기한이 있었으나, 2013년 세법 개정 시 적용기한이 삭제되어 현재는 일몰 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려가 있음.

특히 전산용역의 경우 구조개편의 궁극적인 목표인 어민 지원과는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구조 개편 이후 조직 안정화의 임시방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⁵⁾

둘째, 타 법인에 대해서는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바,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⁶⁾

「부가가치세법」상 법인격이 분리된 주체 간의 용역 공급은 과세거래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임. 현재 일반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명칭사용권(상표권) 및 전산시스템 위탁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데, 수협중앙회 및 수협은행 간 용역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금융지주회사들도 자회사에 대한 위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⁷⁾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88억원 등 2027~2030년

5) 기획재정부,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8) 농협·수협중앙회 부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23.

6) 기획재정부,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8) 농협·수협중앙회 부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23.

7) 제21대국회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상표권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안번호 제2104923호, 제2113114호)이 발의된 바 있음.

4년간 총 352억원(연평균 8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⁸⁾

[명칭사용용역·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국세 (74.7%)	△66	△66	△66	△66	△264	△66
지방소비세 (25.3%)	△22	△22	△22	△22	△88	△22
합계	△88	△88	△88	△88	△352	△8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다만,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동 제도의 감면기간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였는데, 적용기한을 당장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추후 조세특례의 효과성·타당성에 대한 분석 및 지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⁹⁾

8) 어업 경영 및 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해양수산부)에서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 않아 추계 제외

9) 재정경제부는 제도의 타당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세법개정 시 적용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4년 연장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47